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영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74

발의연월일: 2021. 2. 26.

발 의 자 : 윤영덕 · 김승원 · 홍정민

박찬대 · 송갑석 · 조오섭

양향자 • 박홍근 • 최종유

이규민 · 김승남 · 기동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령인구의 감소,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 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 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음.

그 중 하나로써 2020년 「한국사학진흥재단법」이 개정되면서 해산 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 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는데, 그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 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한국사학진흥재단법」을 개정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 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청산지원계정을 학교법인의 청산 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, 종전에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 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 로 귀속되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영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37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4항 중 "국고"를 "「한국사학진홍재단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홍기금의 청산지원계정(이하 "청산지원계정"이라 함)"으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"을 "지방자치단체는"을 "지방자치단체는"을 "지방자치단체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이"를 "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「한국사학진홍재단법」에 따른 한국사학진홍재단이"로, "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, 시·도"를 "시·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전에 해산되었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재산에도 적용하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u>_1</u> _1	n -1 ·1	
현 행 	개 정 안	
제35조(잔여재산의 귀속) ① ~	제35조(잔여재산의 귀속) ① ~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	4	
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		
육기관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		
법인의 재산은 <u>국고</u> 에 귀속되	「한국사학진흥재	
고,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	단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	
교를 설치 · 경영하는 학교법인	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(이	
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	하 "청산지원계정"이라 함)	
에 귀속된다.		
	<u></u>	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	⑤ <u>지방자치단체는</u>	
제4항에 따라 <u>국고 또는 지방</u>	<u>지방자치단체에</u>	
<u> 자치단체에</u> 귀속된 재산을 사		
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		
다른 학교법인에 양여ㆍ무상대		
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		
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	<u>.</u>	
다.		
⑥ 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	⑥ <u>청산지원계정</u>	
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관리	에 귀속된 재산은 「한국사학진」	

하고,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·도 교육감이 관리하되,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기획 재정부장관의 동의를, 시·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.

흥재단법_	에	따른	한국사학진
흥재단이-			
			<u>入</u> ·
<u>E</u>			